

대 법 원
제 3 부
판 결

2001. 9. 25. 판결선고	인
2001. 9. 25. 원본영수	

사 건 2001다41810 보험금
원고, 피상고인 조○○
전북 부안군 백○○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필
피고, 상고인 ○○ 주식회사
서울 중구 ○○
대표이사 배○○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욱
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1. 5. 25. 선고 2000나44982 판결

주 문

1.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, 원고에게 2억 70,413,849원에 대한 1999. 9. 12.부터 2001. 5. 25.까지는 연 10.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,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.

3.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본다.

1. 제1점에 대하여

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, 원심은 김○○이 운전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, 그 판시와 같이 김○○이 자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사실과 함께 반대로 김○○의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을 차례로 인정한 다음, 김○○이 김○○와 전화통화한 내용은 단지 김○○과 사별한 뒤 두달 여 만에 다른 여자를 사귀게 되어 서울로 떠나게 된 데 대한 미안함을 표현한 것일 뿐 자살을 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, 달리 전처와의 사별을 극복하고 김○○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약속한 김○○이 곧바로 마음이 바뀌어서 자살을 결심할 만한 염세적 충동을 느꼈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, 김○○이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삶을 포기할 만한 급박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, 결국 이 사건 사고는 김○○의 운전상 부주의에 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김○○이 자살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면책 항변을 배척하였는바,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,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.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2. 제2점에 대하여

우선 직권으로 살피건대,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, 원심은 피고에 대하여, 원고에게

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금 합계 2억 73,164,925원에서 기지급 환급 보험료 2,751,076원을 뺀 2억 70,413,849원 및 이에 대한 1999. 9. 12.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1. 5. 25.까지는 약관에 정한 대출이율인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있다.

그러나 기록에 의하면, 원고는 약관상 대출이율이 연 10.5%임을 전제로 이 사건 보험금에 대한 1999. 9. 11.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0.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연 25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(항소장의 '연 15%'라는 기재는 착오로 보인다.), 원심이 이 사건 보험금에 대하여 1999. 9. 12.부터 소장 송달일인 2000. 4. 4.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명한 부분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.

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약관상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이율이 연 15%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, 이 사건 보험약관상 대출이율이 연 10.5%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.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의제자백에 의하여 보험약관상 대출이율을 연 10.5%로 인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, 위와 같이 연 15%라고 인정한 것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채 다툼 없는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서, 이 점에서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의제자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기도 하여 상고이유 중 약관상 대출이율에 관한 사실오인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다.

3. 결론

따라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므로, 이를 파기하고,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,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되, 파기 부분에 관

하여는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,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판한다.

원심이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0,413,849원에 대하여 1999. 9. 12.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1. 5. 25.까지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연 10.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5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,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,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용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.

이에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01. 9. 25.

재판장 대법관 이규홍 _____

주 심 대법관 송진훈 _____

 대법관 윤재식 _____

 대법관 손지열 _____